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 1. 신고인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2. 피신고인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노원방송

## 3. 신고 내용

피고발인은 영업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역별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은 매우 심각한 경영상의 곤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성실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2.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3.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 4. 증거물

별도로 첨부합니다.

2014. 7 .2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 1.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협력업체 매출 감소 유발

○ 티브로드는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면서 영업 수수료를 대폭 조정하였다.

- 디지털 영업 수수료는 올리면서 아날로그 영업 수수료는 대폭 삭감하였다.
- 인터넷 결합 상품 영업 수수료는 동결하였다.

○ 아날로그 영업 수수료 대폭 삭감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경우 아날로그 영업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양상이 되었다.

- 아날로그 고급형 수수료를 폐지하고 기본형 수수료도 축소했다.

○ 아날로그 상품 영업 수수료 삭감은 아날로그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013년 영업비 수수료 조정 내역

**단품 수수료**

- 아날로그 고급형 수수료 폐지, 경제형, 기본형 축소
- 디지털 HD Economy 수수료 신설, 베이직, 프리미엄 수수료 조정
- 인터넷, 인터넷전화 현수준 유지, 단, 스마트기가 수수료 터보 수준으로 조정

(단위:원)

구분	판매가		수수료		차이		
	현재	변경후	현재	변경후	판매가	수수료	
아날로그	의무형	-	-	-	0	0	
	기본형	5,000	5,000	9,000	3,000	0	-6,000
	경제형	8,000	8,000	18,000	5,000	0	-13,000
	고급형	10,000	10,000	27,000	-	0	-27,000
디지털	이코노미	-	10,000	-	20,000	10,000	20,000
	베이직	12,000	15,000	31,500	35,000	3,000	3,500
	프리미엄	15,000	18,000	40,500	44,000	3,000	3,500
인터넷 (결합)	스마트그린	10,000	10,000	27,000	27,000	0	0
	스마트광랜	13,000	13,000	63,000	63,000	0	0
	스마트스패셜	14,000	14,000	99,000	99,000	0	0
	스마트터보	16,000	16,000	108,000	108,000	0	0
	스마트기가	23,500	23,500	135,000	135,000	0	0
전화	070	2,000	2,000	4,500	4,500	0	0
	번호이동	2,000	2,000	27,000	27,00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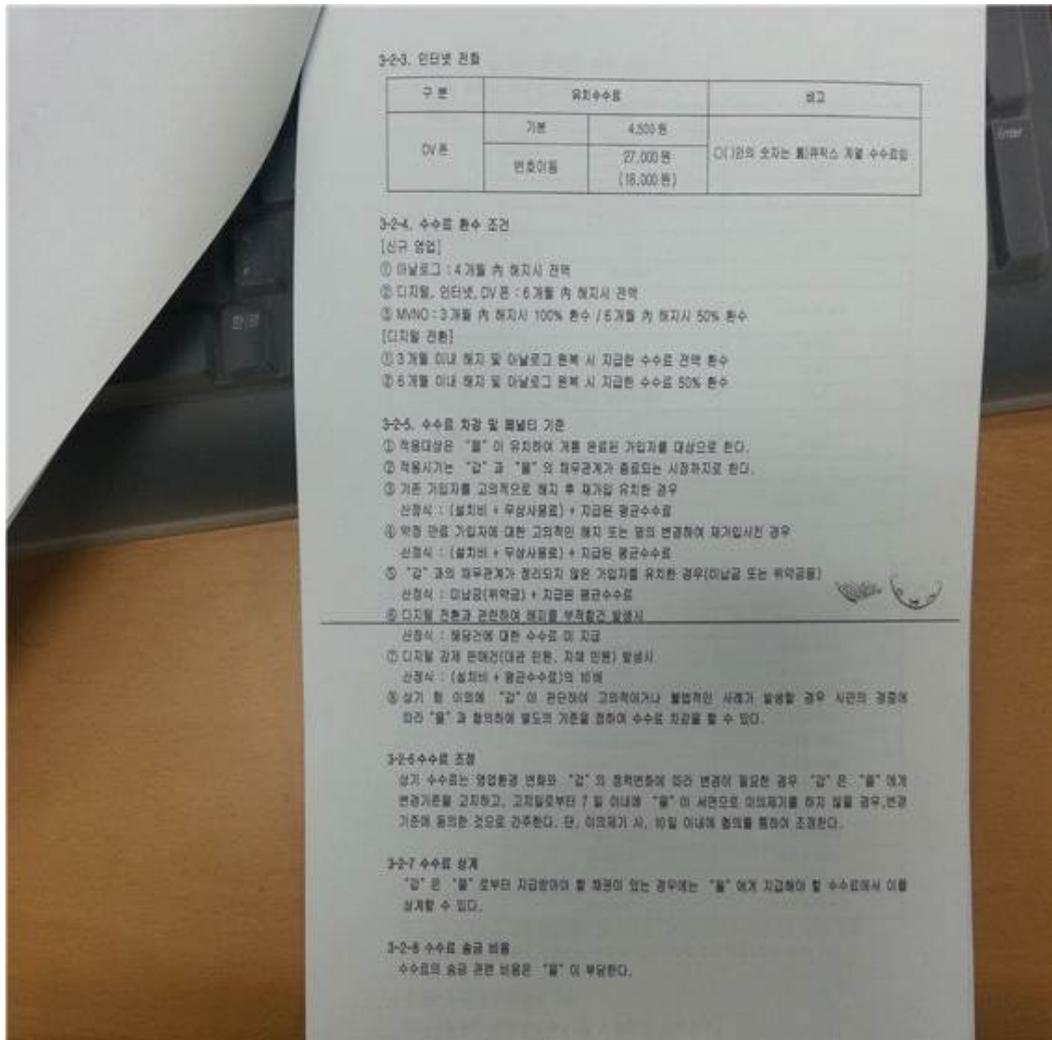
\* 큐릭스권역 번호이동 수수료 현재와 동일(18,000원)

○ 인터넷 결합 상품 영업 수수료는 동결했다.

- 이 때문에 인터넷 결합 상품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결합 상품은 영업을 해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 2. 가입 해지 시 그에 대한 부담을 협력업체들에게 전가함

- 티브로드는 가입자가 해지를 하면 협력업체로부터 해당 수수료를 모두 환수하고 있음.
- 아날로그는 4개월, 디지털은 6개월 내 해지만 협력업체는 지급받았던 수수료를 모두 반환해야 함.
- 이에 따라 협력업체에서는 고객 해지 사실을 숨기거나 해지된 고객의 요금을 부담하면서 수수료를 반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음.





### 3. 영업 수수료를 단가 지급 방식에서 포인트 제도로 전환하여 협력업체 경쟁 강요

○ 2014년 2월 티브로드는 영업 수수료 산정 방식을 건 당에서 점수제로 변경함.

- 아날로그 영업 점수와 디지털 영업 점수를 차등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영업 성과를 차별함.
- 디지털 영업 환경이 나쁜 지역의 고객 협력사들은 이로 인해 원청으로부터 받는 영업 수수료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짐.

13년 월평균		2014년 사업계획								
일반산규	환산점수	90% 달성시 실적		100% 달성시 실적			110% 달성시 실적			
		13년비	환산점수	13년비	환산점수	13년비	환산점수			
918	907	979	106.6%	833	1,088	118.5%	925	1,197	130.3%	1,017
959	816	1,085	113.1%	902	1,205	125.7%	1,004	1,326	138.2%	1,103
1,355	1,156	1,434	105.8%	1,090	1,593	117.6%	1,211	1,752	129.3%	1,333

○ 영업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지원금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협력업체 경쟁을 부추기로 있음.

- 고객 협력사는 이 점수를 넘지 못하면 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
- 고객 협력사들은 원청 정책 변화와 더불어 유통점 난립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에 일상적으로 노출됨.

I. '14년 협력사 운영 개선(案)\_영업활동비

▶ 환산점수 Grade별 지급액 구분

구분	환산점수 기준 Grade											
	0점	100점	200점	300점	400점	500점	550점	600점	650점	700점	750점	
지급액	0	1,000	2,000	4,000	6,000	8,500	11,500	14,500	19,000	24,000	28,500	

구분	환산점수 기준 Grade											
	800점	850점	900점	950점	1,000점	1,050점	1,100점	1,150점	1,200점	1,250점	1,300점	
지급액	31,500	34,500	37,000	39,000	41,000	42,000	43,000	51,000	54,000	64,000	69,000	

구분	환산점수 기준 Grade											
	1,350점	1,400점	1,450점	1,500점	1,550점	1,600점	1,650점	1,700점	1,750점	1,800점	1,850점	
지급액	73,000	74,000	74,800	75,600	76,300	77,000	77,700	78,300	78,900	79,300	7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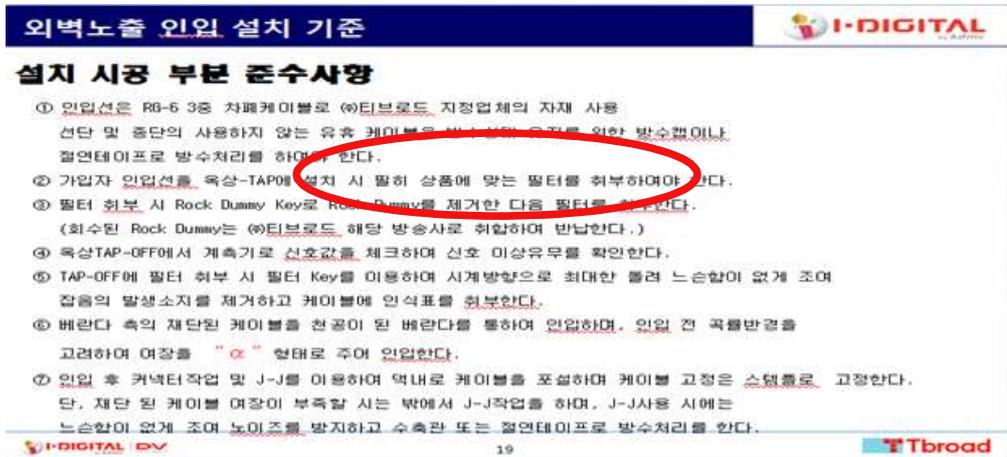
  

구분	환산점수 기준 Grade									
	1,900점	1,950점	2,000점	2,050점	2,100점	2,150점	2,200점	2,250점	2,300점	
지급액	80,300	80,700	80,900	81,100	81,300	81,400	81,500	81,600	85,000	

#### 4. 원청이 지정한 업체 자재 구입 강요

○ 설치와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자재 구입에 지정업체 자재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 티브로드는 지정업체 자재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지정자재 미사용'이라는 이유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고가의 자재 비용을 부담해야만 함.



○ A 고객협력사에 따르면 동축케이블은 에이치앤홀딩스와 커넥터는 엔씨솔루션이 지정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함.



- 지정업체는 티브로드 원청 임원 출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였음.
- 에이치앤홀딩스 대표이사인 허영호 씨는 abc방송(안양방송) 대표이사 출신이며 태광 티브로드 진원진 고문 라인으로 알려짐

## 5. 기존 협력업체의 권한 일방적 축소와 경영 보장 폐기

-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은 영업·설치·유지보수·철거를 담당하는데 지역별로 독점권을 가지고 운영되었음.
  - 서울도봉노원기술센터는 도봉노원지역을, 시흥광명기술센터는 시흥시와 광명시 지역에서 티브로드와 1:1 위수탁 계약을 맺고 경영 활동을 진행함.
  
- 티브로드는 협력사들의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변경함.
  -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 업체를 운영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의 경영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함.
  - 이로 인해 지역 협력업체들은 설치 물량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
  - 협력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영업·설치 외주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수탁 계약 위반으로 보아야 함.
  
- 각 사업부별로 운영하는 유통점과 외주 영업팀을 거느리고 있음.
  - 한 유통점이 여러 지역에서 영업·설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

<티브로드 유통점 현황>

서서울사업부			
종로중구방송	서대문방송	동대문방송	강서방송
지앤	대성엔에스	대성엔에스	노을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모아 센터	지앤	대성엔에스
	올레 센터	창대_비즈	대성HK
	SM 센터	한일정보통신	비에스정보통신
	서서울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신호통신
	지앤	히트에코	지앤
	지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대성엔에스		

동서울사업부		
도봉강북방송	광진성동방송	노원방송
㈜한일정보통신	윤정보통신	대성엔에스
대성엔에스	이룸정보통신	윤정보통신
리얼 센터	지앤	이룸정보통신
스카이 센터	창대_비즈	지앤
아이유 센터	한일정보통신	창대_비즈
HN_센터	히트에코(직영)	한일정보통신
윤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히트에코(직영)
이룸정보통신	대성엔에스	
지앤		
창대_비즈		
한일정보통신		
히트에코(직영)		
biz-인포스월드		

경인사업부		
새롬방송	남동방송	서해방송
노을정보통신	금영_센터	노을정보통신
대성엔에스	유플_센터	대성엔에스
대성HK	노을정보통신	대성HK
신호통신	대성엔에스	신호통신
유민네트웍스	대성HK	유민네트웍스
지아이네트웍	신호통신	지아이네트웍
지앤	유민네트웍스	지앤
한국정보통신	지아이네트웍	한국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지앤	NIT네트웍 정보통신
이원 센터	한국정보통신	
현성 센터	NIT네트웍 보통신	
폰마트 센터		

ABC사업부	한빛사업부	중부사업부	전주사업부	수원사업부
다운정보통신	다운정보통신	노을정보통신	구이유선	(주)케이애드플러스
다인	대성엔에스	대성엔에스	대성엔에스	다올아이앤씨
대성엔에스	명인정보	두리정보	두리정보	대성엔에스
드림플러스	신호통신	에스네트워크	무주	거찬_센터
미준정보통신	썬앤문	유진텔레콤	봉동케이블라인	성진_센터
상정	에버그린시스템	제이엔파트너스	사선	이레_센터
신호통신	에이스통신	지아이네트워크	신호정보통신	신호정보통신
아이앤아이	엔티피아	지앤	온케이블삼레유선	아이앤아이
에이스통신	엠비비	창대_비즈	은영정보통신	온라인_뽀뽀(모바일)
지앤	엠케이넷	프리텍	지앤	외부_금영
한일정보통신	인터비즈	biz-디지털정보통신		외부_성경
biz-티비케이엔	제이비즈	SMT		외부_썬앤케이
	지앤			외부_엠투랩
	탐정보통신			외부_이앤씨
	biz-티비케이엔			외부_제일지사
	DK정보통신			외부_통신생협
	한빛_구월_센터			유민네트웍스
	한빛_에스씨_센터			제이로드

부산사업부		대구사업부	기남사업부
낙동방송	서부산방송	TCN방송	베스텔_센터
낙동_NK_센터	대성엔에스	고구려통신	수호_센터
대성엔에스	동서_한빛	탐정보통신	풍무_센터
선우아이티	선우아이티		하늘_센터
중앙과워텍	중앙과워텍	대구방송	대성엔에스
지앤	지앤	고구려통신	보고넷(주)
케이블넷	케이블넷	대성엔에스	세븐정보통신
티미디어	티미디어	지앤	스피드통신
한신정보통신	한신정보통신	탐정보통신	신호정보통신
		티미디어	에버그린시스템
		한울정보통신	에이스통신
동남방송			온라인_뽀뽀(모바일)
대성엔에스		대경방송	우리넷
동남_한소리_센터		고구려통신	지노네트웍스
선우아이티		대성엔에스	지앤
중앙과워텍		지앤	창대_비즈
지앤		티미디어	탐정보통신
케이블넷		한울정보통신	퍼펙트통신(직영)
티미디어			JH정보통신
			JS정보통신

## 6. 일방적인 계약 변경 가능 조항을 추가하여 협력업체를 일방적으로 옥죄는 구조 심화

○ 별도의 외주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수탁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의 물량을 이관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아래의 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협력사가 작업(설치, 철거, AS)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타업체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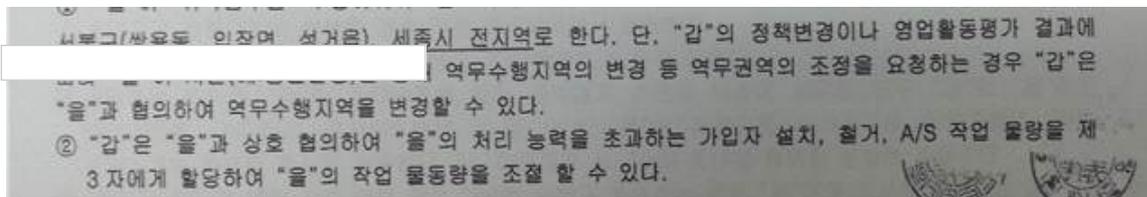
II. '14년 기술 협력사 및 외주비 운영 방안		운영방안
<p>▶ 고정 지급 상생지원금을 '14년 외주비 단가 조정을 통해 변동 지급</p> <p>▶ 기술협력사 작업처리 초과건(설치) 고객협력사 (외부업체 포함) 이관 처리</p>		
주요 추진 과제	추진 방향	변경 사항
기술 협력사 관리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27개사 유지</li> <li>✓ 센터 분리/통합 없이 현재 상태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 사항 없음</li> </ul>
작업물동량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협력사 작업(설치,철거,AS) 처리 능력 초과건 타업체 이관 추진</li> <li>✓ 작업 이관건 약 3,000 - 4,000건/주 발생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 업무위탁 계약서 내용 추가</li> <li>✓ 타업체 이관 처리 가능토록 계약서 업무범위 수정</li> </ul>

○ 협력사들이 작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외주업체에 물량을 이관 가능하도록 계약서 업무 범위까지 수정하였음.

- 협력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빼앗아 외주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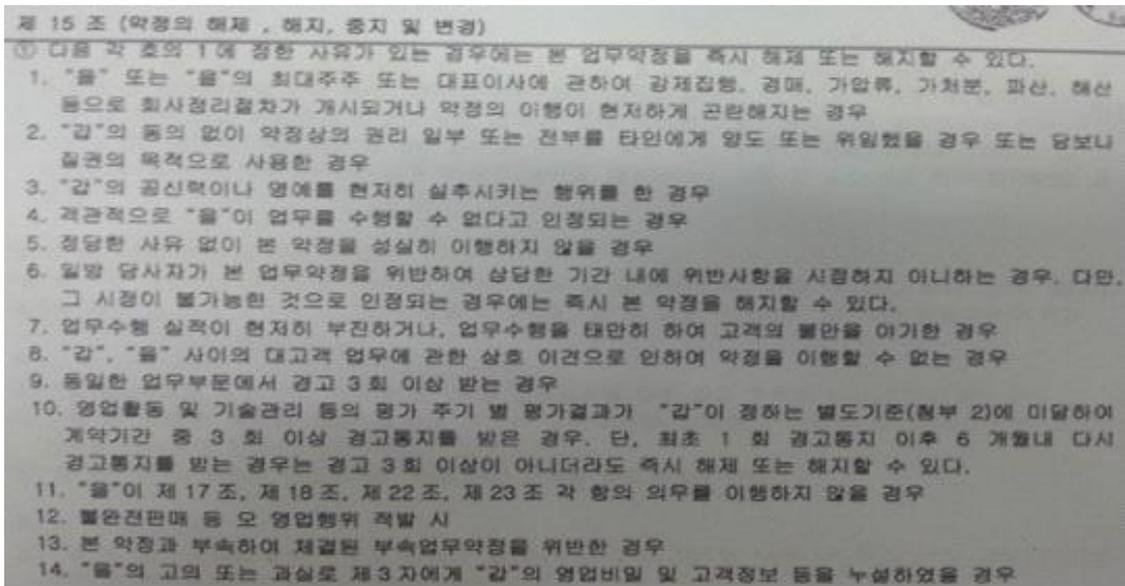
- 이는 위수탁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 업무를 언제라도 타 업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음.

티브로드 위수탁 계약서 제 6조(업무수행 지역 및 작업 물동량 조절)



## 7. 원칙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를 명시하고 협력업체를 옥죄고 있음

- 티브로드는 협력사들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마음대로 협력업체를 변경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위수탁 계약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여 해마다 업체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하는 지위 남용 행위를 남발하고 있음.



- 업무 수행 실적이나 업무 수행 능력 평가는 모두 원칙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됨.
- 티브로드를 매월 협력업체 업무 수행 실적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등급을 매기고 있음

## 8.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여 협력업체 경영을 위협함.(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위수탁 계약 강요)

- 협력사가 고객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함.
-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

### 제 22 조 (손해배상 등)

- ① “을”은 본 업무약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제 3 자에 대하여 “갑”을 대리 또는 대표하거나 그에 관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을”은 본 업무약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관하여 “을” 또는 “을”의 ‘업무수탁자’가 고객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갑”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②항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을”의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 상의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 또한 일체 협력사들이 부담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할 내용까지도 협력업체들에게 전가하는 위수탁 계약을 작성

### 제 20 조 (안전관리)

- ① “을”은 작업전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에 대한 제반 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의 요청시 안전기록에 관한 제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산재보험)

- ① “을”의 ‘업무수탁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업무수탁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책임 및 민,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원청이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협력사 채권을 상계할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함.
- 심지어 수수료 송금 관련 비용마저도 협력사들이 부담하도록 명시.
- 원청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반 사회적 태도를 보임.

### 3-2-7 수수료 상계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 3-2-8 수수료 송금 비용

수수료의 송금 관련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원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위수탁 계약서를 작

성하고 있음.

- 일방적으로 원청에게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끼치는 손해나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들은 전혀 할 수 없음.

○ 위계에 의한 강압적 계약 내용은 즉각 시정해야 함.